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43

제출일자 : 2024. 8. 23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가. 상위법령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반영

나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개정사항 반영

다.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복지심의위원회, 실무위원회 등)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202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른 위탁 기간 변경(안 제6조)

○ (기존) 3년 이내 → (변경) 5년 이내

나.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 운영 주체 변경(안 제12조)

○ (당초)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→ (변경) 달성군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제23조

(2)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3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(2) 입법예고(2024. 7. 24. ~ 8. 14.) 결과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　　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,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(이하 ”실무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탁운영) ① ~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제6조(위탁운영) ① ~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,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12조(실무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(이하 ”실무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	제12조(실무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-----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(이하 ”실무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관 계 법 령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

제23조(위탁계약의 내용)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9. 24.>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)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(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24. 4. 1.)
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.(개정 2024. 4. 1.)
1.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3.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
4. 수탁기관 선정방식
5. 민간위탁 추진일정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7.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8.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(본조신설 2023. 4. 28.) (제목개정 2024. 4. 1.)

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24. 4. 1.)
1. 수탁기관의 선정(신설 2024. 4. 1.)
2.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(신설 2024. 4. 1.)
3.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신설 2024. 4. 1.)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

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.(개정 2024. 4. 1.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.
1.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
2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
가. 의회 의원(단,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)
나.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
3. 변호사 · 공인회계사 · 노무사 · 기술사 ·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6.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개정 2024. 4. 1.)
④ 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(개정 2024. 4. 1.)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3. 4. 28.)
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⑦ 위원 구성 및 수당 · 여비 등의 지급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(개정 2022. 10. 28., 2024. 4. 1.)